

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3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3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 ~ 제129조

구미시의회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범위) 본의회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 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.	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 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</u> 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장	3. <u>법 제126조부터 제129조</u> ----- ----- 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7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